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0년 4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코로나 19 대유행의 불확실성 하에서 기업(금융기관 포함)과 감사인이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 규정 적용시 유의사항
-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세무 및 법률정보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Tax Tips: 2020년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 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2020년 4월호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하에서
기업(금융기관
포함)과 감사인이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
규정을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하에서 기업(금융기관 포함)과
감사인이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 규정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2020. 4. 13]

I. 배경

배경

- 코로나 19 위기경보의 심각단계 격상(2.23 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유행 선언(3.12 일) 등으로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1 분기보고서(기업 작성) 및 검토보고서(감사인 작성, 5 월 15 일까지 제출)가 작성되는 시점이며,
- 시장에서는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대표적인 예 : 대출채권, 매출채권)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손상이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 손상인식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 9) 규정 >

-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채무불이행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면, 금융자산의 전체 존속기간동안 기대되는 신용손실*(ECL)을 손상으로 인식

*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 현재 부실화(예: 거래처의 재무상태 악화 등)된 채권뿐만 아니라, 정상채권에 대해서도 미래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

- 기대신용손실 금액 산정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을 적용하고 조정할지에 대해 판단(judgement)이 필요하다고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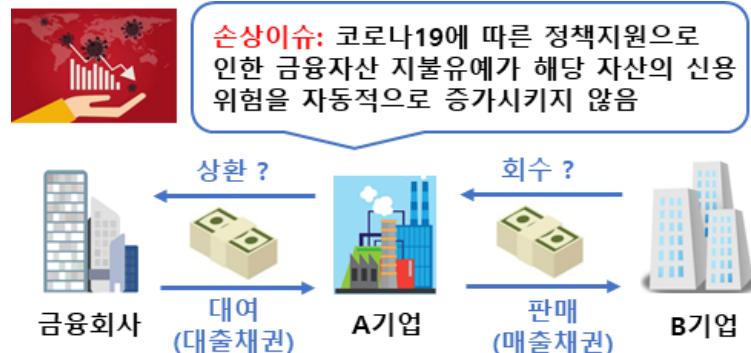
유의사항 주요내용

II. 유의사항 주요내용

- 코로나 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속에서 기업들이 금융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들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이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먼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정책상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는 않음.

2020년 4월호

- ❷ (A 기업은 B 기업관련 매출채권 보유) → A 기업이 (코로나 19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B 기업 관련 매출채권에 대금회수 유예조치를 하여도 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기업과 감사인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규정 적용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과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금융안정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부조치는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함
- ⇒ 기업들은 코로나 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코로나 19 관련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 조+@” >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 자금 공급 → 58.3 조원	②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 31.1 조원	③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 10.7 조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대출, 보증공급)	▶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지원	▶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코로나 19 대유행으로부터 초래되는 현재의 불확실성하에서 IFRS 9(금융상품)의 손상 규정 적용시 동일한 취지의 안내문을 최근 발표('20.3.27 일)한 바 있음

2020년 4월호

기대효과**III. 기대효과**

-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 하에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지원 혜택 관련 기업들이 금융상품 관련 손상 검토 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출처: 금융감독원, 2020. 4. 13]

- ▶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3월 30일로 종료 함에 따라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

개요**I. 개요**

-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하는 ①재무제표 심사제 정착과 감사인의 자발적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②품질관리수준 평가제 추진 등을 통해 사전예방·지도 중심의 감독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 안정적 전환을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실효성을 갖춘 심사·감리 운영과 시장참여자 간 선진화된 시장규율 정립이 중요

- 최근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IT기반 재무·감사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 등

⇒ 적정정보 적기 제공을 위한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제고, 취약분야·시장질서 저해기업에 대한 회계감시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

2020년 4월호

중점추진사항

II. 중점추진사항

목표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중점 추진 과제
**중대 회계부정의
적발 기능 강화**

-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진단 및 선제적 대응
- 디지털 감리 등 혐의 적발·입증기능 제고를 위한 감리수단 강화
- 익명신고제 도입을 통한 회계부정 제보 활성화 유도

**심사 실효성 제고로
적정정보 적시 제공**

-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을 통한 신속한 정보공시 유도
- 新분식위험 측정시스템 개발 등으로 심사 실효성 제고
- 기업의 내부감사(감사위원회) 역할 충실향 유도

**회계법인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 상시 모니터링 및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 강화
- 감사품질 정보에 대한 충실성 및 접근성 제고
-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정착 지원

**탄력적 감독으로
新제도 정착 지원**

- 조치기준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제재 수용성 제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 관련 지원 지속(시행초기로 계도 위주 운영)
- 회계인프라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과 감리사례 등 정보제공 확대

위험·예전
**경제 불확실성
고조**

- ☞ 한계기업 증가 우려

감사여건 개선

- ☞ 감사품질간 선순환 정립 필요

**급격한 제도
변화**

- ☞ 탄력적 감독·집행 요구

감독환경 급변

- ☞ 디지털 기반
감독 필요성
점증

2020년 4월호

중대한 회계부정의
적발·입증기능 강화

◆ 회계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감리수단·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고의적 분식을 효과적으로 억제

□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진단 및 선제적 대응

- 경제 불확실성 고조로 한계기업 등 이익조정 가능성이 있거나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4 대 회계리스크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① 한계기업(연속하여 영업손실 발생 등), ②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③ 최대주주 사외편취 우려기업, ④ 업황 악화 등 취약업종

※ [참고] 상장폐지기업 수 : ('16)21 사 → ('17)25 사 → ('18)39 사 → ('19)38 사

-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예고된 주요 회계이슈*와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 * ① 신리스기준서 회계처리, ② 충당부채·우발부채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③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관련 수익인식, ④ 유동·비유동 분류(사전예고,'19.6.)

□ 위반혐의 포착 및 입증기능 강화

-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감리업무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사실관계 확인, 자료 확보 등을 위해 현장조사 적극 활용

□ 회계부정에 대한 엄중 조치

- 익명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회계부정 제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중대사건은 다수 감리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감리

*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 착수

-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등과 관련된 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적극 대응

심사 실효성 제고
등으로 적정정보 적
시 제공

나. 심사 실효성 제고 등으로 적정정보 적시 제공

◆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제고, 내부감사의 역할 충실향을 통해 적정 회계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재무제표 심사제의 확립

- 재무제표 심사착수 후 3개월 내 종료*,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

* 위법행위 발견, 회계기준상 쟁점사항 발생, 회사 소명 지연 등의 경우 연장

** 심사매뉴얼 및 프로세스 효율화, 심사·감리조직 분리 등

- 핵심적 주석심사사항을 선정하고 획일적·추상적 공시가 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여 재무공시 충실도 제고

2020년 4월호

[참고] '19년 재무제표 심사제 운영 결과(요약)

1. 심사처리 결과 [39건 기준]			2. 평균지적률 [경조차+감리전환]			3. 평균처리기간	
무혐의	경조차 ^{*1}	감리전환	전체	표본심사 ^{*2}	협의심사 ^{*3}	전체	
20건 (51.3)	14건 (35.9)	5건 (12.8)	48.7% [19/39]	21.7% [5/23]	87.5% [14/16]	80일	

() : 비중

*1 주의, 경고, 감경후 조치없음(종전에는 경조차도 감리위, 증선위를 거쳤으나, 심사제 도입 후 금감원에서 종결)

*2 무작위, 위험요소 등으로 선정된 기업, 상장예정기업

*3 외부제보, 일정 규모 이상 자진오류수정기업 등

- 新분식위험 측정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심사 실효성 제고
 - 기업별 분식위험도 측정, 특이·위험항목 선별 등을 통해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新분식 위험 측정 시스템 개발·구축
 - 감사인 감리와 재무제표 심사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상호 간 감독대상 선정 시 반영하는 등 연계 강화
- 기업의 내부감사(감사위원회) 역할 충실화 유도
 - 기업의 내부감사가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교육·지도를 강화하고 모범사례 마련

다. 회계법인의 공공성·책임성 제고

 회계법인의
공공성·책임성 제고

◆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에 따라 감사인이 Gatekeeper로서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회계법인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 상시 모니터링 및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 강화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별 전담 검사역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시보고 사항*, 모니터링 결과 취약부문, 등록요건 유지 여부 등을 감사인 감리 시 중점 점검

* 감사보고서 철회·재발행, 회계법인 독립성 위반, 대표이사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 등

[참고] 감사인 공공성·책임성 관련 제도 현황

1. 감사인 지정 현황

(단위 : 사, %)

구 분	2018년		2019년	
	전체	상장사	전체	상장사
지정수(A)	699	284	1,224	807
외감회사(B)	31,473	2,230	32,431	2,326
지정비율 (A/B)	2.2	12.7	3.8	34.7

2.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현황(19년 시행)

('20.3월말 기준)

구 분	수
대형	상장사 100개 이상 감사 또는 회계사 수 600명 이상
중형	상장사 30~100개 미만 감사 또는 회계사수 120~600명 미만
소형	그 외 회계법인
	합계
	40

2020년 4월호

□ 감사품질 정보에 대한 충실성 및 접근성 제고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등 관련 세부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기재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충실한 공시 유도

*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이사 보수(5억원 이상) 등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편·운영(필요시 유관기관과 공동 추진)

*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조치, 감사인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사업보고서 정보 등

□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정착 지원

-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지표·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과 회계법인 자체 품질관리수준 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탄력적 감독을 통한
新제도의 안정적 정
착 지원

라. 탄력적 감독을 통한 新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새로 도입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회계개혁의 시장 연착륙 유도

□ 조치양정기준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제재 순응도 제고

-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되, 회사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부과기준 마련

- 감사인 조치 시 감사과정을 중점 검토하여 제재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과실 오류 자진정정 시 감경유인 제공

□ 내부회계관리 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및 계도 실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실태분석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검토사항(체크리스트), 조치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도입 초기에는 계도 위주로 운영 예정]

□ 회계인프라 취약기업 지원 및 감리사례 등 정보 제공 확대

- 코넥스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이 특히 주의해야 할 빈번한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 심사·감리 사례, IFRS 질의회신 등을 회계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

심사감리대상

III. 심사감리대상

◆ 금감원은 2020년에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1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2020년 4월호

재무제표 심사·감리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전년(159사) 대비 21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재무제표 심사제 고도화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회계기준 위반 혐의건수 및 위반건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표본심사 대상은 4대 회계리스크 부문,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으로 100여사 내외로 선정

*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혐의심사 대상*은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사 내외로 추정

* 외부제보, 일정규모 이상(중요성금액 4배 이상 등)의 회계오류 수정기업 등

감사인 감리**나. 감사인 감리***

* 종전 품질관리감리에서 외감규정 제23조 제7항에 따라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감리 와 감사인의 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사인 감리'로 용어 변경

- 상반기 3사, 하반기 8사 등 총 11개 회계법인(대형 3사, 중형 2사, 소형 6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 감사인 감리 결과 발견된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은 외부에 공개하며 재위반시 실질적인 조치 부과

- '20년 중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기대효과**IV. 기대효과**

◆ 사후적발·제재 위주의 감독규율에서 벗어나 기업과 감사인의 자기규율 역량을 키우고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시장규율을 활용하는 선진화된 자본시장 질서 정립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지도 위주의 재무제표 심사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감독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예정

- 제도 변화로 기업의 자체적인 내부회계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자기규율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활동 도 병행

2020년 4월호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자율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감독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 감독규율, 자기규율 및 시장규율*이 균형을 이루는 선진화된 자본시장 질서가 정립되기를 기대

* (감독규율) 감독당국의 감시, 제재에 의한 규율
(자기규율) 기업, 감사인의 내부 통제에 의한 규율
(시장규율) 정보이용자 등의 평가와 선택에 의한 규율

2020년 4월호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경우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 2020.04.08)

(사실관계 및 판단)

- ○○○○○(이하 "신청법인")는 "***'라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온·오프라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이하 "***상품권")을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고 있음.

- 고객이 신청법인의 시스템(App · Web)에서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 권면에 부여된 Pin번호를 App이나 Web에 접속하여 등록하는 경우 ***포인트가 적립 또는 충전됨.

- 충전된 ***포인트*는 신청법인과 제휴한 사용처에서 이용 가능

* ***포인트는 권면금액 1만, 3만, 5만, 10만, 30만 등 5종이 있음

< ***포인트 발행 · 사용 과정 >

①*** 앱 실행→②구매사이트 접속→③***상품권 구입→④상품권Pin번호 등록→⑤***포인트로 적립(충전)→⑥매장방문→⑦상품 등 수령

(질의요지)

- 사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 포인트")을 적립할 수 있는 ***상품권(종이 또는 모바일)을 발행하는 경우

-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0년 4월호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 2020.04.03)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은 계약일에 대금을 "Transferwise(트랜스퍼와이즈)"에 송금을 하고, 신청법인은 트랜스퍼와이즈와 제휴된 국내 기업인 '(주)페이게이트'를 통해 원화로 대금을 입금 받음

* Transferwise(트랜스퍼와이즈) : P2P방식으로 환전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외화를 송금해주는 영국의 핀테크 기업

** 페이게이트 : 전자결제지급대행업, P2P금융, 외화송금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

- 신청법인은 본건 거래에서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경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질의하였음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33 조제 2 항제 1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4 조제 1 항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제 2 항제 1 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0년 4월호
Tax Tips:

**2020년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2020년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1.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예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 장이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부터 2일 이내 ○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 가> <추 가> <추 가> 	<input type="checkbox"/>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 ※기존예규(재소비46015-41,2002.2.8. 부가 46015-494,2001.3.14. 부가가치세 과-200, 2009.1.14.)

2020년 4월호

3.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내에서 비거주자 ·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 · 용역은 영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서비스업* * 법무(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회계사, 세무사업), 광고업, 시장조사업, 경영컨설팅 업 -사업지원서비스업* * 인력공급 · 고용알선업, 사무지원 서비스업 등 <p><추 가></p>	<input type="checkbox"/> 상호주의 적용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연 2.1% 	<input type="checkbox"/> 이자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1% → 1.8%(△0.3%p)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020년 4월호

5.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다음 각 호의 사항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변경○ 상속에 따른 사업자 명의 변경○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등○ 사업장 이전○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자동 정정 허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도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없이 사업장 이전 허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020년 4월호

업무 소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조직, 인사 전략 / HR▪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